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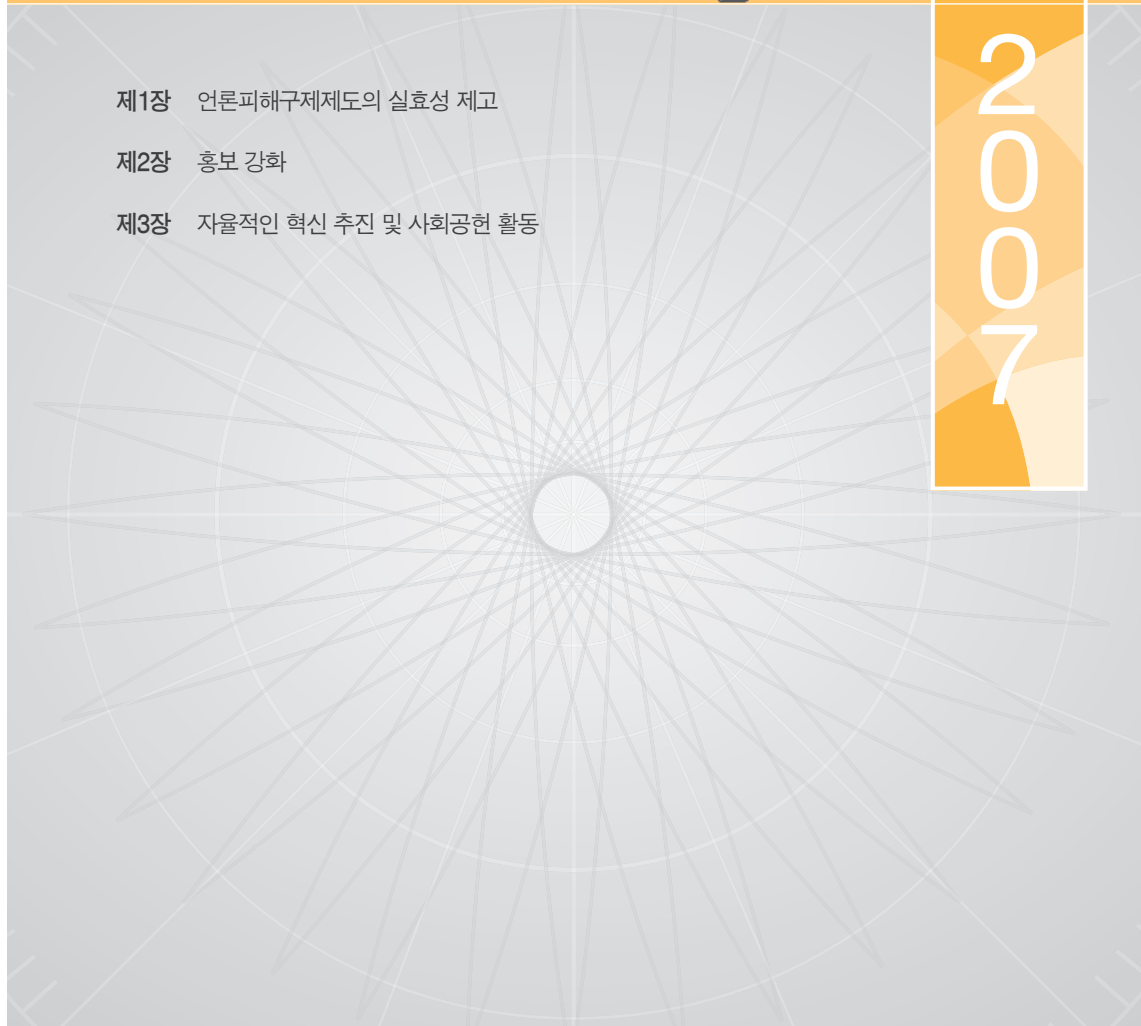
# 제3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2장 홍보 강화

제3장 자율적인 혁신 추진 및 사회공헌 활동

2007



## 제1장

#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언론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론관련 판례분석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판례분석 자료를 조정·중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운용을 모색하였으며, 조정·중재사건의 증거조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2007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용만족도조사와 지역 언론인 간담회 등은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신청인 및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중재위원 워크숍은 전국 16개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정·중재 관련 제도와 실무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 1. 조정·중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가. 언론 관련 판례분석 시행

###### (1) 개요

위원회는 언론법제에 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제도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07년

부터 국내 언론 관련 판결분석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물로 2008년부터 매년 판결동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양태와 판결경향, 주요 쟁점별 실시내용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조정·중재 심리에 참고하고 선도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언론인에게는 인격권 침해 예방의 지침을, 언론법 연구자에게는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2) 추진실적

(가) 판결수집 및 분석

“

조사분석팀 발족으로 본격적인 판례분석 시작

”

위원회는 그 동안 위원회 업무와 밀접한 언론보도 관련 소송 즉, 언론보도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한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수집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수집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수집되는 판결이 선별적일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는 2007년부터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검색 시스템과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언론관련 판결을 정기적으로 검색하고, 각급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여 수집한 결과 판결수집 건수가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표 43] 최근 3년간 판결수집 건수

(2007. 12. 31. 현재)

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타	계
2005년	84	16	15	115
2006년	86	36	27	149
2007년	125	92	27	244
계	295	144	69	508

위원회는 수집된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분석틀을 마련하였는데, 분석유목은 크게 일 반사항, 원고분류, 피고분류, 매체분류, 보도내용분류, 청구별 처리결과, 심급별 처리결과, 손해배상분류, 반론보도분류,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등이며 모두 40여개 항목으로 세밀하게 구성하였다.

이 분석틀에 맞춰 판결을 분류하면서 분석틀을 계속 검증하여 수정·보완하였고, 코딩자에 따라 각 변수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석 유목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석 결과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코딩 완료 후, 2008년 상반기에 <국내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첫 분석보고서에서 수록할 분석대상 판결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선고된 언론관련 민·형사 소송사건이다. 2009년부터는 전년도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매년 판결 동향 분석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분석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40여개의 분석유목에 따른 통계적인 분석내용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사생활침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등으로 구성된 쟁점별 분석내용이다.

#### (나)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발간

위원회는 국내 언론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그 일부를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은 연 1회 책자로 발간하여 언론사, 학계, 법조인, 관련기관 등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언론피해의 사전예방 및 올바른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까지 모두 14집이 발간된 판결집은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판결을 전문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2007년 발간된 제14집의 경우 반론보도청구사례 3건, 정정보도청구사례 5건, 손해배상청구사례 24건, 기타 사례 3건을 수록하여 1,200부를 발간하였다.

#### (3) 전망

위원회가 판결분석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언론관련 판결은 전수에 가까운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은 지금까지의 어느 연구보다 신뢰성이 높을 전망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2008년부터 발간하게 될 판결분석보고서는 그 동안 발간해 오던 <국내언론관계판결집>과 더불어 위원회 뿐만 아니라 언론계 종사자, 언론법제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 증거조사 활성화

### (1) 개요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심리한다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이 양 당사자의 소송 수행능력이 대등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소송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위원회의 조정신청 절차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언론을 상대로 하는 분쟁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증거를 수집·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해당 중재부가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 사건의 해결을 돕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2) 증거조사 현황

“

증거조사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214회 실시

”

2007년 한 해 동안 조정사건에 대한 사실 및 증거조사는 모두 214회 실시하였다. 전년도의 5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조사 유형별로는 판례(조정례) 및 법령 조사 57건, 사실조회 44건, 참고인 진술청취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판례 및 법령 조사는 침해유형 등에서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와 위원회 조정사례를 조사하거나 관련 있는 학설, 논문, 법령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건과 관련있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도 증거조사의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4]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증거조사 현황

[2005. 7. 28. - 2007. 12. 31.]

구분 연도	소계	사실 (의견) 조치	석명 준비 명령 (요구)	문서 (Tape) 송부 촉탁	현장 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판례 (조정례) 및 법령 조사	관련 보도 내용 조사	손해 배상액 산정	기타
2005	62	10	2	4	3	7	15	4	14	3
2006	59	20	9		1	11	10	6	1	1
2007	214	44	31	2	13	34	57	17	2	14
총계	335	74	42	6	17	52	82	27	17	18

\* 한 사건에 대해 증거조사는 한 가지 이상 실시된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조사가 실시된 사건수와 증거조사 현황은 차이가 있음

#### 다. 조정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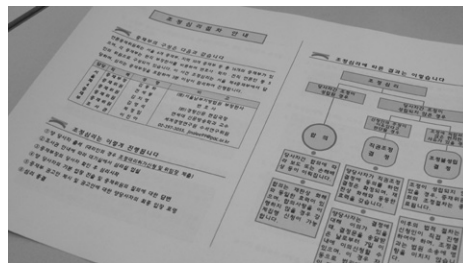
인터넷, 구술에 의한 접수 크게 증가

”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구술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2007년도에도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전체 신청건 중 62.1%에 달하던 방문접수 비율이 2006년 53.4%, 2007년 43.5%로 줄고, 인터넷 접수는 2005년 15.5%, 2006년 22.9%, 2007년 29.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p35, [표 7]접수 유형별 현황 참조)

한편, 사건을 접수한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건기일 등을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이외에 2008년도부터는 조정심리안내문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다. 안내문에는 해당 중재부와 중재위원, 처리절차 등



➔ 당사자를 위한 조정심리안내문

이 알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 가. 개요

위원회는 과거 부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이용만족도 조사를 2003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그리고 교육 수강자(일반인, 언론인)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위원회 업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조사에서도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이용만족도를 평가하고, 상담·교육업무의 고객서비스를 점검하며, 위원회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업무 개선방향 등을 설정해 보기 위한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주)에 의뢰하여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7년 11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는 〈2007년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조사방법은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경우는 우편 조사를 하였고, 상담이용자는 전화조사를, 그리고 교육수강자는 현장에서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 나. 조사결과

“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 크게 늘어*

”

2007년도 조사결과 위원회의 조정·중재업무와 관련한 종합만족도는 신청인이 73.7점(2006년 73.4점), 피신청인이 71.9점(2006년 67.3점)으로 조사되어 2006년도 조사결과보다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가 크게 늘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이용만족도 점수 격차는 6.1점에서 1.8점으로 크게 줄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피신청인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공정한 조정·중재업무 수행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손해배상청구권 시행에 대한 언론인 평가 향상

”

특히,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2005년 7월 이후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점수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한 피신청인(언론인)의 평가점수가 2006년 대비 2점 상승한 62.7점으로, 신청인의 평가점수는 2006년과 거의 같은 86.8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피해구제율이 2006년 55.9%에서 2007년 63.1%로 크게 상승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신청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2006년도 조사결과보다 약간 상승하여, 신청인 97.4%(2006년 92.7%), 피신청인 98.3%(2006년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신청인, 피신청인의 절대 다수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조정심리에 참석한 피신청인(언론인)의 87.8%(2006년 84.3%)가 심리 참석 뒤 이전보다 기사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하여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취재보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언론분쟁 상담기능에 대하여 신청인의 91.8%(2006년 94.3%), 피신청인의 93.0%(2006년 90.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피신청인 응답자의 87.0%(2006년 80.4%)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위원회 상담 창구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인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방 언론인 간담회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 방편으로 언론사 대표 등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총 20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사회

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축적된 운영 성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위원회와 지역 언론인 상호간의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06년도부터 실시한 언론보도 담당 편집·보도 국장들과의 간담회를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간담회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언론보도 담당 편집·보도 국장들과의 간담회는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언론사측 인사와 상호간의 실무적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간담회를 통한 이해 도모는 결국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4. 중재위원 워크숍

중재위원 워크숍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중재위원 상호간 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위원회는 중재위원들의 조정·중재 실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연 1회씩 중재위원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2007년도 워크숍에는 전국 중재위원 중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제도 활성화 및 조정만족도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2007년도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한 CI 선포식도 진행함으로써 언론과 국민의 공정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07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 제3절 | 전망

2008년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상담 및 신청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증거조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그 동안 기울여왔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효율적 조정·중재제도 운용 방안은 위원회 사무처의 제안제도를 통해서도 채택·시행되고 있다. 2006년에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언론관련 판례분석과 2008년부터 실시하는 조정·중재절차 안내문 제공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 제2장 홍보 강화

## 제1절 | 개요

2007년도에 위원회는 홍보 강화를 위해 새 CI(Corporate Identity) 제작, 홍보 전담 부서 설치, 어린이 및 장애인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새 CI는 다리 모양을 형상화하여 국민과 언론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2007년 4월 선포식을 통해 새로 제작된 CI를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것을 다짐했다.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며,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위원회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와 중등학교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이 수록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매체에 광고집행을 늘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 위원회 CI 선포식 (2007. 4. 27.)



▶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어린이 중재교실'

##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 1. CI 제작

“

위원회 CI 제작으로 친근한 이미지 제고

”

위원회의 구 CI는 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디자인과 이미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로고 자체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 제작된 CI는 다리모양과 천칭모양, 그리고 한글 자음 ‘ㅈ’을 복합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즉,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리모양으로, 공정한 중재자 이미지로 천칭모양을,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조정과 중재의 머릿글자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과거 CI의 느낌이 차갑고 딱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모양과 공정한 중재자 이미지의 천칭 모양, 조정과 중재의 머릿글자 ‘ㅈ’ 등을 형상화한 위원회 CI

### 2. 어린이 및 장애인에 대한 홍보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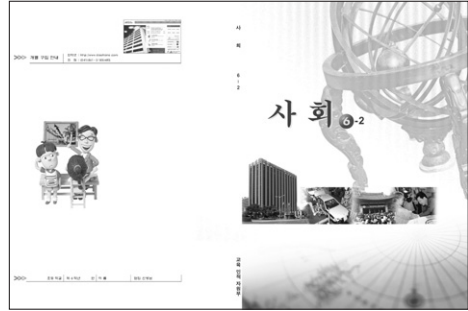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위원회 소개 내용 수록

”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5년부터 시도되어 왔다. 2007년에도 장애인 관련 매체에 위원회 광고를 집행하고, 점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어린이 대상 홍보를 새롭게 시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등학교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수록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 중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위원회의 업무내용이 법률용어 등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림과 쉬운 용어로 어린이들도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위원회 관련 내용이 수록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 3. 미디어 퍼블리시티

미디어 퍼블리시티 업무는 계기별로 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위원회 사업에 대한 홍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홍보 전담부서가 설치되기 전에는 미디어 퍼블리시티 업무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통일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홍보 전담부서가 설치된 후 보도자료 배포 및 관리 업무가 일원화·체계화됨으로써 미디어 퍼블리시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2007년 한 해 동안 행사개최 안내 및 각종 통계 등 보도자료를 총 17회 배포했다.

행사개최 등 안내 외에 회지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에 게재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논문 내용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것 등은 위원회 홍보를 위한 미디어 퍼블리시티의 좋은 사례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년간 접수 처리된 총 196건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사례를 분석한 이 논문은 국민의 인격권 보호장치로 운용되어 온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 위원회 홍보를 위한 미디어 퍼블리시티에 활용되었다.

## 4. 광고집행

2007년 광고집행은 방송광고 297회(TV 129회, 케이블TV 140회, 라디오 28회), 신문 91회, 인터넷 배너, 잡지, 지하철 등 기타매체 광고 103회 등 모두 491회 실시했다. 광고집행 예산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문 광고에 있어서 기존에 집행하던 돌출광고의 크기(2단×5cm)를 1단으로 줄이는 대신 게재 횟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집중적인 게재를 시도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45] 2007년도 광고 집행 현황

[2007. 1. 1. - 12. 31.]

구분	TV	케이블 TV	라디오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월간지	주간지	기타	계
횟수	129	140	28	45	46	33	22	32	16	491

### 제3절 | 평가 및 전망

2007년도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 신청인은 73.5%, 언론인은 9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2006년 대비 각각 7.8%, 3.6%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년 대비 위원회 인지도가 약간 낮게 나타난 것은 광고집행 예산이 감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 인지 경로를 묻는 설문에 TV광고를 비롯한 광고를 통한 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008년 광고 집행 예산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광고집행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 매체에 광고를 분산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광고 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지도 저하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의 친근한 이미지 제고이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위원회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신뢰감, 사회적 책임 등 다른 이미지에 비해 ‘친근감’ 항목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생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광고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쉽고 재미있게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방문하여 언론피해구제 시스템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3장

# 자율적인 혁신 추진 및 사회공헌 활동

###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사무처 혁신 워크숍, 사내 인트라넷, 제안제도 등 혁신 활동의 기반으로 마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문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 인트라넷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농촌마을과의 1社 1村 자매결연, 위원회 봉사동호회를 주축으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 1. 업무 개선 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인 혁신 환경 조성

“

제안제도 활성화 등 '일상 속 혁신' 지속 추진

”

위원회는 제안제도 운영과 직원 혁신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3건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매 분기마다 위원회의 각종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점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신평등 운영’ (제안 07-1호), 웹하드에 위원회 주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위원회 사료(史料)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 07-2호), 조정심리 참석자를 위해 조정·중재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는 ‘당사자를 위한 안내문 제작’ (제안 07-6호)’ 등 채택된 제안들 모두 업무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2005년부터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있는 직원혁신워크숍은 전 직원의 혁신 마인드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7년도 워크숍에서 직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위원회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위원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부서별 사업 개선안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모색했다.



→ 2007 상반기 직원혁신워크숍

한편 위원회는 2007년도에 ‘업무기술서’를 도입, 각 부서별 업무 프로세스를 통일된 양식에 맞춰 기재하여 부서별 단위 업무의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기술서’는 단순히 업무 진행 과정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부서장이 업무 개선 의견을 기술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상 속의 혁신’ 추진의 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2. 혁신 마인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인트라넷을 혁신 아이디어 토론장으로 적극 활용

”

혁신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

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구성원 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신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사무처 및 중재위원 인트라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트라넷에 업무 혁신 제안 및 토론 공간을 마련해 혁신의 체질화를 도모함은 물론 각 중재부의 담당 조사관들은 심리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인트라넷에 게시함으로써 조정·중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법제 연구 동호회 등 학습 동호회를 운영하고, 제안제도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Re-do Party'를 개최해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 3. 나눔의 정신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

위원회는 2006년 봉사동호회를 결성하고, 농촌마을과의 1社 1村 자매결연을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동해 온 이후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2006년 9월 노사협의를 통해 매월 직원급여의 일정액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기금 지원액과 동일한 액수를 위원회 예산에서 지원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태안지역 기름제거 작업에 동참한 위원회 직원들

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모임인 ‘코이노니아’는 정신지체장애우 주거시설 및 치매노인 요양시설,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여 전 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한 경기도 이천 포기실 마을에서 개최한 민속 행사에 직원들이 참여, 국악인 초청공연을 실시한 것은 자매결연 우수 사례로 언론에 여러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진정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실현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3절 | 평가 및 전망

위원회는 2006년 혁신평가 대상 공공기관에서 배제된 이후, 자발적인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조직문화 조성’을 2007년 혁신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직원혁신워크숍 개최, 인트라넷 운용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마인드를 공유함으로써 혁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BSC)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2007. 9. 3.)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혁신 및 성과관리 월례회의’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개선 시스템과 혁신활동 점검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활력적인 혁신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혁신 추진성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참여 의지를 고취해야 할 것이다.

2008년에 위원회는 제안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며, 부서별 자체 업무 성과점검 시스템을 갖추는 등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